

환경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4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의 배출허용기준 초과판단기준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교육 세부사항 위임(안 제9조의8)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나. 통합환경관리인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1)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요건 및 선임 기준 신설(안 제24조의2, 제24조의4, 제24조의6, 별표13의2)

통합환경관리인을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구분하고 자격 요건과 사업장별 선임기준을 규정함

2) 통합환경관리인 겸직허용사유 규정(안 제24조의3, 별표13의3)

환경오염시설법에서 통합환경관리인이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예외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겸직허용사유를 규정함

3) 교육 및 경비, 업무위탁 관련 규정 신설(안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별표 13의4)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 세부사항을 정하고 교육경비 관련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고시로 위임하였고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를 규정함

4)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14)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의무 미준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함

다. 타법개정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초과여부 판단기준 개정(안 별표8)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22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초과판단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허가대행기술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 통합환경총괄관리자

- ③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기준은 별표 13의2 제2호와 같다.

제24조의3(검직)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3의3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24조의4(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3의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13의4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이라고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의 장(이하 “환경산업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3의4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3.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 확인증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산업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에 발급받은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⑥ 환경산업협회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의4 서식의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의5(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선임·해임·퇴직서
2.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3. 통합환경관리인 교육 이수 확인증(선임하려는 통합환경관리인이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3의2제2호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통합환경관리인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24조의6제3항 각 호에 구분에 따른 자를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
2.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통합환경총괄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4조의6(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환경총괄관리자

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 총괄

나.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관리·감독

다. 그 밖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

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

나. 그 밖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통합환경총괄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통합환경총괄관리자의 직무: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다만,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의 직무를 겸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24조의7(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은 별표 13의4와 같다.

제24조의8(교육의 위탁)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
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전원

②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이수 확인증은 별지 제10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9(교육경비)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2.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별표 8 제2호다목1) 중 “3시간 평균치”를 “24시간 평균치”로, 같은 1) 중 “3시간 평균치”를 “24시간 평균치”로, 같은 1) 중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10회”를 “1회”로 한다.

별표 13의2부터 별표 13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 14)부터 16)까지를 각각 15)부터 17)까지로 하고,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15호	선임 명령	경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5일
---	----------------	----------	----	----------------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0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통합관리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891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또는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통합환경총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제1조에 따른 시행일 후 2년 이내에 별표 13의2제2호에 따른 통합환경총괄관리자의 선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제24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조에 따른 시행일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6서식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환경기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은 법률 제1891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 다음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별표 13의2]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기준(제24조의2제2항 관련)

1.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

- 가.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 나.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다.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라.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2. 사업장별 선임기준

-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m³ 이상인 사업장: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인 이상과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인 이상
- 나. 가목 외의 사업장: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인 이상과 통합환경일반관리자 1인 이상

3.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 가.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갖춘 자
- 나.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 2)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3)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4)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9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비고

-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 2. 폐수배출량의 산정은 제4조제3항에 따른다.
- 3.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미만이면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m³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4.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별표 13의3]

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제24조의3 관련)

1. 겸하고자 하는 직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다만 해당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과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나, 영 별표 1 비고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기술관리인
- 다.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기술관리인
-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기술관리인
-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의 자격을 갖출 것

3. 통합환경관리인이 재직 중인 사업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겸하고자 하는 직무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미만인 사업장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m³ 미만인 사업장

비고

-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 2. 폐수배출량의 산정은 제4조제3항에 따른다.

[별표 13의4]

통합환경관리인 교육과정(제24조의4제2항 및 제24조의7 관련)

구 분	교 육 내 용	교육 시간
자격취득 교육	1. 통합환경관리 개론 2. 통합환경관리 법령 3.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론 4.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실무 5. 연간보고서 작성 및 사업장 관리공정 실무 6.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0
보수교육	1. 통합환경관리 정책 및 동향 2.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사례 및 허가 기술 검토 3. 허가 배출기준 설정 4. 공정도 및 물질수지 작성 5.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

비고

1. 교육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의 방식으로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은 전체 교육시간의 5분의 1 범위에서 사이버교육 또는 화상 교육 등 전산망을 활용하여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재해·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체 교육 시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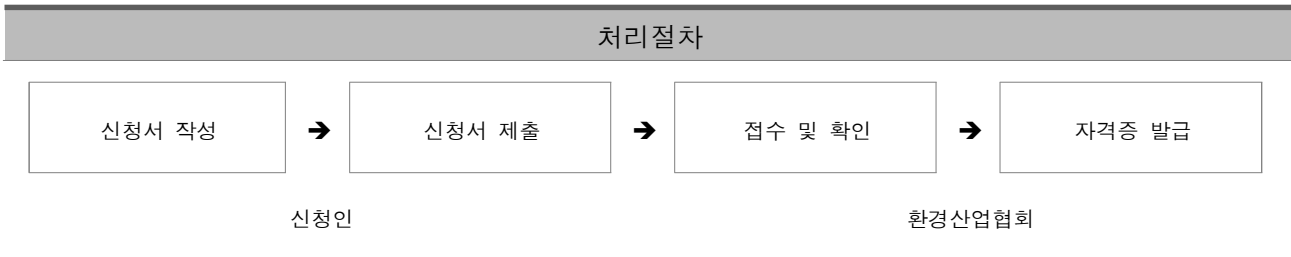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산업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4.5cm) 1장 2.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을 의미합니다) 각 1부 3.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 확인증 1부	수수료 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격번호	제 호	자격 취득일
재발급 사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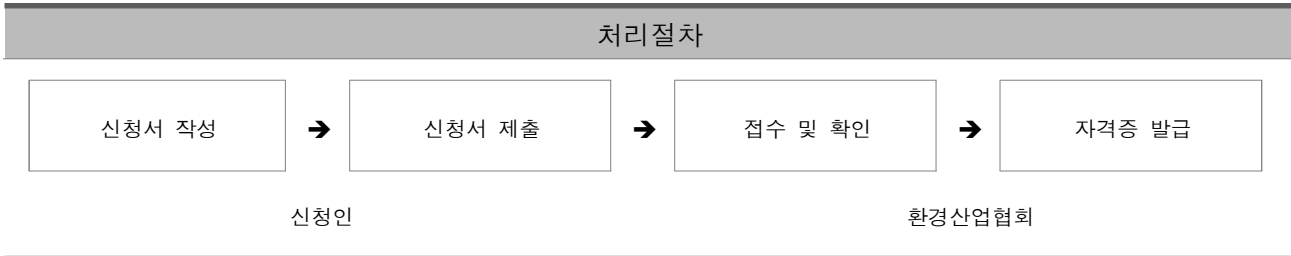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산업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존에 발급받은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4.5cm) 1장	수수료 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앞쪽)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자격 번호)	
사진 (모자를 벗은 상 반 신 으 로 뒷 그림 없 이 6개월 이 내 촬영한 것)	성 명: 생 년 월 일: 보수교육 기간:
(발급일)	환경부장관 직인

86mm×54mm[PVC(비닐) 980.4g/m²]

※ 참고

자격증은 원색과 별색 잉크를 복합한 미세선 문양과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秘標)를 넣어야 한다.

(뒤쪽)

연월일	기재사항 변경	확인인
법 제21조의4제1항 각 목의 기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은 정지됩니다. 다만,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		

통합환경관리인 [] 선임 [] 해임 신고서 [] 퇴직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 리 기 10일 간
------	-----	-----	----------------

신고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개요	통합환경관리인 ()명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명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명
	종업원 수		
	사업장 구분 대기 () 종 수질 () 종		

통합환경관리 인구분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 통합환경일반관리자		
---------------	-----------------------------	--	--

선임·해임· 퇴직자	성명		자격 번호
	주소		생년월일
	선임·해임·퇴직 연월일	년 월 일	직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해임 []퇴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환경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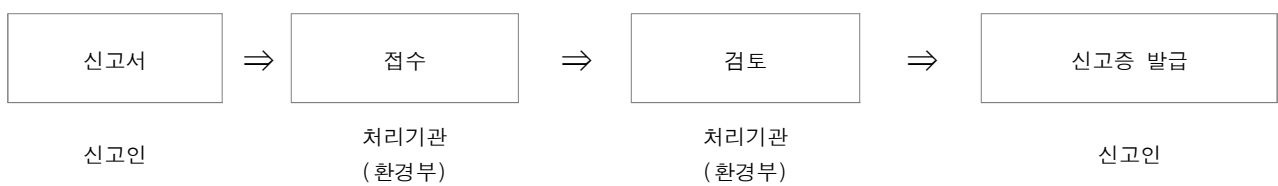
첨부서류	1.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선임·해임·퇴직서	수수료
	2.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통합환경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기존 환경기술인이 아닌 자를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최초 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자를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통합환경총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통합환경총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으로 간주되는 환경기술인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없음
	5. 통합환경관리인 명단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통합환경관리인 ☐ 선임서 ☐ 해임서 ☐ 퇴직서				
통합환경관리인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 통합환경일반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현장 종사기간	자격증	비 고
통합환경관리 교육 양성과정 이수 사항				
교육 내용				
특기 사항				
년 월 일				
사업장 명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제 호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신고내용 : ☐ 선임 ☐ 해임 ☐ 퇴직
6. 통합환경관리인(통합환경총괄관리자[], 통합환경일반관리자[])
(생년월일)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5 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 리 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통합환경 관리인	구분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 통합환경일반관리자	
	① 연장 기간		
	연장 사유		
	업무 대리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5 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 1부	수수료
	2.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통합환경총괄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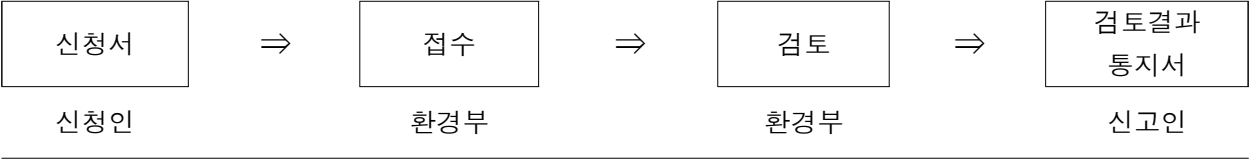
① 란은 30일 이내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

	환경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선임연장 검토결과 통지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승인 여부 : [] 승인 [] 불승인
6. 연장 승인기간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기간 연장 신청을

[] 승인합니다.

[] 불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8(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 인력 육성 등) ①·② (생략)	제9조의8(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 인력 육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허가대행기술자 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신 설></u>	<u>제24조의2(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u> <u>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종류는 다음 과 같다.</u> <u>1. 통합환경일반관리자</u> <u>2. 통합환경총괄관리자</u> <u>③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기준은 별표 13의2 제2호와 같다.</u>
<u><신 설></u>	<u>제24조의3(검직) 법 제21조의2제2 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3의3 각 호의 사 유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u>

<신 설>

미한다.

제24조의4(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3의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13의4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이라고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의 장(이하 “환경산업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합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3의4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3.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 확인증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산업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에 발급받은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합판(3 × 4센

<신 설>

티미터) 사진 1매

⑥ 환경산업협회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의4 서식의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의5(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선임
· 해임 · 퇴직서

2.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3. 통합환경관리인 교육 이수 확인증(선임하려는 통합환경관리인이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

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3의2 제2호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통합환경관리인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10호의7 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24조의6제3항 각 호에 구분에 따른 자를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

2.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통합 환경총괄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승인여

<신 설>

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0호의9
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
주어야 한다.

제24조의6(통합환경관리인의 업
무)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
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환경총괄관리자

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
른 업무 총괄

나.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관
리·감독

다. 그 밖에 사업장 통합환경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

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
른 업무

나. 그 밖에 사업장 통합환경
관리를 위하여 통합환경총
괄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대행

<신 설>

<신 설>

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
행하게 하여야 한다.

1. 통합환경총괄관리자의 직무: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다만, 통
합환경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
총괄관리자의 직무를 겸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
환경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
고 있는 자로 한다.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
고 있는 자

제24조의7(통합환경관리인 보수
교육)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
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
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
육 과정은 별표 13의4와 같다.

제24조의8(교육의 위탁) ① 법 제
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

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전
원

②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이수 확인증은 별지 제10호의10
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업무를 위탁받
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
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
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신 설>

2. 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9(교육경비)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2.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교육경비